

# 일반사무 위·수탁 변경계약서

주식회사 이리츠코크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자”)와 주식회사 케이비펀드파트너스(이하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본 일반사무 위·수탁 변경 계약(이하 “본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 전 문

1. “위탁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등록)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부투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사무수탁회사이다.
2. “위탁자”와 “수탁자”는 2019년 1월 31일 “위탁자” 보유자산의 사무관리업무에 관하여 일반사무 위·수탁계약(이하 “원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계약”에서 제공하는 모든 일반사무관리 위탁업무는 물적 분할 후 본 변경 계약서상의 “수탁자”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기 체결된 원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탁자” 주체를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 다 음

변경 전	변경 후
“수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 길 26 회 사 명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자 : 은행장 허 인	“수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26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비펀드파트너스 대표이사 : 이 민 호

4. 본 변경계약의 효력 등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변경계약에서 변경되지 않는 한 원계약에서의 모든 조항은 그 규정된 바대로 유효하며 그에 따라 해석된다.
- ② 본 변경계약은 2024년 6월 3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변경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4년 7월 8일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골든타워 (주)코람코자산신탁내)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리온코크랩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 김 영 규 (인)



“수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피원드파트너스  
대표이사 : 이 민 호 (인)

